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195 제출연월일: 2024. 9. 2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」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"국가안보나 공공질서"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,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,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 페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
- 2.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2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(난민인정의 제한) 법무부	제19조(난민인정의 제한)		
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			
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	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			
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			
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			
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			
할 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		
	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		
제22조(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)	제22조(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)		
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	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		
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
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	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		
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	취소할 수 있다.		
정을 취소할 수 있다.	1.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		
	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		
	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		
	<u> 혀진 경우</u>		
	2.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		
	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		
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	②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
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③ (생략)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 7.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

 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

③ (현행과 같음)